

# 안산도시관리계획(가스공급설비, 도시자연공원, 하수도) 결정(변경)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번호	24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0.23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금번 의회의견 청취 제안 사유는 지경부 고시 제2012-200호에 의해 건설 계획에 있는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양질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긴급 상황시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가스공급설비(사동B/V)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,
-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2014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시화MTV에 안산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안산 및 경기 서남부 지역 등 수도권 전력공급 및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자 함
- 이에 안산복합화력발전소에 양질의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록구 팔곡일동에 위치한 반월관리소(G/S)에서 분기하는 공급배관을 신설 계획하였음
- 공급배관 관경은 26"(D660mm), 총연장 L=13km이며, 관로 연장 8km마다 가스누출, 이상 사태 발생시 그 부분의 양측을 차단하고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한 차단밸브(Block Valve)를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항임
- 가스공급설비(사동B/V)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해 사동공원(도시 자연공원)과 사동펌프장(하수도) 일부가 사동B/V로 편입되며,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공간시설

#### 1) 도시자연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 $m^2$ 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③	사동공원	도시자연 공원	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162임 일원	1,120,398.4	감)1,154.7	1,119,243.7	건설 제1977-53호 (1977.3.28)	자연녹지 지역

#### 2) 도시자연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③	사동공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적감소 : <math>1,154.7m^2</math> (<math>1,120,398.4m^2</math> <math>\rightarrow 1,119,243.7m^2</math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춰 발전소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 노선 중 긴급상황 발생시 고압가스를 신속 차단하여 사고확산을 방지하는 차단밸브(사동B/V)를 설치하기 위함</li> <li>공원을 제척하여 가스공급설비 <math>1,034.4m^2</math>, 하수도 <math>120.3m^2</math>의 면적이 변경됨</li> </ul>

### 나. 유통 및 공급시설

#### 1) 가스공급설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 $m^2$ )	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③	가스 공급설비 (사동관리소)	안산시 상록구 사동 1031-11번지 일원	-	1,154.7	1,154.7	-	자연녹지 지역

#### 2) 가스공급설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③	가스 공급설비 (사동관리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적증가 : <math>1,154.7m^2</math> (<math>0m^2 \rightarrow 1,154.7m^2</math>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춰 발전소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 노선 중 긴급상황 발생시 고압가스를 신속 차단하여 사고확산을 방지하는 차단밸브(사동B/V)를 설치하기 위함</li> <li>공원면적 <math>1,034.4m^2</math>, 하수도면적 <math>120.3m^2</math> 을 제척하여 가스공급설비로 변경됨</li> </ul>

## 다. 환경기초시설

### 1) 하수도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⑨	펌프장	안산시 상록구 사동 1272번지 일원	3,939.8	-	3,939.8	안고 제1994-32호 (1994.6.4)	자연녹지 지역

### 2) 하수도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⑨	펌프장	• 면적변경 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형현황과 도시계획선이 서로 상이하여 오수펌프시설이 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시 조정하려 함</li> <li>하수도면적 120.3m<sup>2</sup>을 가스공급설비로, 공원면적 120.3m<sup>2</sup>을 하수도로 변경됨</li> </ul>

## 라. 시설결정 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③	사동공원	• 증감면적: 공원→하수도: 공원 →가스공급설비:  감) 1,154.7m <sup>2</sup> 감) 120.3m <sup>2</sup> 감) 1,034.4m <sup>2</sup>	수도권 전력수급의 불균형해소와 경기 서남부 지역의 전력수요증가 대비 및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로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화MTV내 안산복합발전소 건설계획에 맞춰, 발전소내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 노선 중 긴급상황 발생시 고압 가스를 신속 차단하여 사고화산을 방지하는 차단밸브(사동B/V)를 설치하기 위함
③	가스공급설비 (사동관리소)	• 증감면적: 공원→가스공급설비: 하수도→가스공급설비:  증) 1,154.7m <sup>2</sup> 증) 1,034.4m <sup>2</sup> 증) 120.3m <sup>2</sup>	
⑨	펌프장	• 증감면적: 공원 →하수도: 하수도→가스공급설비:  0m <sup>2</sup> 증) 120.3m <sup>2</sup> 감) 120.3m <sup>2</sup>	

## 마. 편입토지조서

### 1) 지목별 토지조서

구 分		계	잡	답	도	기타
계	필 지 수	3	1	1	1	-
	면 적 ( m <sup>2</sup> )	1,155	728	300	127	-
	구 성 비 ( % )	100.0	63.0	26.0	11.0	-

### 2) 소유자별 편입토지조서 집계표

구 分		계	사유지	국공유지
계	필 지 수	3	-	3
	면 적 ( m <sup>2</sup> )	1,155	-	1,155
	구 성 비 ( % )	100.0	-	100.0

### 3) 세부 편입토지조서

연 번	행정동		지번	지목	면적		소유자	
	시·구	동·리			지적	편입	성명	주소
합 계					1,445	1,155		
1	안산시 상록구	사동	1031-11	잡	975	728	공(안산시)	
2	안산시 상록구	사동	1042-3	답	300	300	공(안산시)	
3	안산시 상록구	사동	1137	도	170	127	국(건설부)	

### **3. 추진경위 및 계획**

#### **가. 주요추진경위**

- 2011. 09 : 안산복합발전소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(안산시, 삼천리 등)
- 2012. 03 : 안산복합발전소 공급설비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 공고
- 2012. 05 : 설계 및 감리용역 착수(벽산엔지니어링(주))
- 2012. 08 : 안산복합발전소 실시계획 승인(지경부 고시 제2012-200호)
- 2012. 10 : 안산복합발전소 공급설비 건설공사 기본설계 완료
- 2013. 01 : 도시관리계획(가스공급설비)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접수  
(한국가스공사→안산시)
- 2013. 03 : 도시관리계획(가스공급설비)결정을 위한 주민제안 자문위원회 개최
- 2013. 05 : 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 신청 및 관련부서 협의
- 2013. 07 : 부서협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
- 2013. 10 : 주민공람·공고(10.14.~10.28.)
  - 공고 매체 : 지방일간지 2개소(중부일보, 기호일보),  
안산시 홈페이지, 공보(시보, 도보), 게시판 등

#### **나. 향후추진계획**

- 2013. 11 : 설계기술 심의,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- 2013. 1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- 2013. 12 : 원가심사 및 발주,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및 공람공고
- 2014. 01 : 실시계획 인가 고시
- 2014. 06 : 공사준공

#### 4. 관계법령 발췌내용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- 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⑤ 국토해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- 제22조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
- ⑦ 법 제28조제5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3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·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
- 라. 공원(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제외한다.)

- 파. 하수도(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)

첨부자료 1. 도시관리계획(가스공급설비, 도시자연공원, 하수도)변경 결정도 1부.

2. 면적변경 배치도 1부.